

# 간행위원회 규정

제정 2020년 8월 11일

## 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대한스트레스학회 간행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구성 및 임기)

간행위원회는 간행위원장을 포함하여 부간행위원장, 간행위원, 자문간행위원으로 구성한다. 대한스트레스학회 간행이사는 스트레스연구 학술지의 간행위원장 업무를 담당한다. 간행위원장, 부간행위원장, 및 간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3조(업무)

위원회는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,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1.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
  - 1) 간행에 관한 사항

- 2)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
  - 3) 게재료의 결정
  - 4) 투고 및 게재 예정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결정
2. 학술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

- 1)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학술지 연례 평가 준비
- 2) 한국연구재단,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학술지 평가 등의 준비
3. 학회지 투고관련 규정의 정기적 검토
4. 심사위원의 선정과 관리

## 제4조(회의)

간행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간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학술지 출판 및 발전에 관한 업무에 대해 논의한다.

## 부칙

이 규정은 대한스트레스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